
메타버스 자율규제 운영현황

2025. 7. 10.

1. 자율규제 개요

□ 도입배경

- 메타버스의 특성상 급변하는 서비스와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위험에 대한 규제 공백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,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요구되었으며,
 - 성범죄 유사행위,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사회적 우려 불식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규제 비용을 절감하여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

□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적 근거

- (정책방향)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('22.1월),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('23.3월)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 표명
- (법적근거)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」 제정('24.2월)으로 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 주도의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

〈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자율규제 조문〉

제27조(자율규제) ①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제공·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자율규약의 제정·개정 및 시행
2.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
3.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
4.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2. 추진 경과

- 정부 주최 산·학·연·관 자율규제 간담회 개최('23.10월)
- '자율규제'(제27조)를 규정한 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」 제정('24.2월)
-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('24.4.5)
- 융복합 산업분야 유관단체와 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식 개최('24.7.9)
-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·운영('24.7.17)
- 메타버스확인분과, 분쟁조정분과 설치·운영('24.9월)
- 자율규약 시행세칙, 분과운영규정, 메타버스 확인 가이드라인, 체크리스트 마련('24.10~11월)
- 메타버스 분야별* 가이드라인 마련('24.12월)
 - * 메타버스 거래분야, 이용자보호 분야,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
- 2024년 메타버스 자율규제 성과 공유회 개최('24.12.11.)

3. 자율규제 추진체계

□ 자율규제위원회

- 메타버스 산업 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
 - (구성) 위원장 1명, 분과장 2명, 학계 1명, 이용자보호 1명, 법조계 1명, 산업계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
 - (역할) 자율규약, 가이드라인 등 제·개정,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사업자 지원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수행

□ 분과위원회

-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분과, 메타버스확인분과를 설치
 - (분쟁조정분과) 메타버스 사업자, 이용자들의 서비스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, 학계, 법조계, 산업계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
 - (메타버스확인분과) 메타버스 확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능형 메타버스 서비스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계, 법조계, 산업계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

□ 사무국

- 자율규제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(협회 내 인력 활용)

4. 주요 추진 성과

□ 자율규제 이행수단 마련

- (자율규약 제정)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인 자율규약을 제정('24.6월)하고,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시행세칙 및 분과 운영규정 마련('24.8월)
- (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) 특정 서비스 분야별로 메타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마련('24.12월)

<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>

분야	주요내용
기능형 메타버스 확인	-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는 게임물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된 목적이 사회적 상호작용소통, 교육학습, 의료, 쇼핑 등 오락이 아닌 '기능형 메타버스'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
거래분야	- 메타버스 내 거래에 대한 3면 관계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 규정
이용자 보호	- 메타버스 내 명예훼손, 디지털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메타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
지식재산권 보호	- 메타버스 내 창작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 및 지식재산의 이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메타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

- (자율점검표 개발) 사업자가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실천윤리 반영 여부를 스스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(자율점검표)를 개발·보급

□ 자율규제 활성화 환경 조성

- (자율규제 우수사례 발굴) 자율규제 우수사례 모집·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'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상' 수여('24.12월)
 - * '24년도에는 엘지유플러스 키즈토피아(체험학습 플랫폼), 웅진씽크빅 스마트올(자기주도형 학습 플랫폼) 2개사가 선정
- (자율규제 성과공유회 개최) 자율규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, 실천윤리 자율규제 우수사업자 시상 등 성과 공유의 장 마련('24.12월)

□ 사업자 분쟁해결 절차 지원

-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도록 법률(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31조 제3항)에 규정

〈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조문〉

제31조(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)

③ 매출액,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·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, 분쟁해결의 전문성·공정성·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홈페이지 구축(<https://dispute.msrc.or.kr>)

5. 주요사업 추진사항

□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활성화

- (자율규제위원회) 자율규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자율규제 관련 이슈발굴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
 - 특히, 자율규제 참여 사업자 확대, 심의안건 발굴 등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확대
- (분쟁조정분과)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신고와 연계하여 분쟁조정 절차 마련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하고,
 - 자율규약 협약을 맺은 참여 사업자 및 유관단체를 활용하여 분쟁조정처리 접수 홈페이지를 적극 홍보하고, 사업자 참여 유도
- (메타버스확인분과) 메타버스 확인 심의가 필요한 산업계 수요를 발굴하여 메타버스확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를 추진
 - 특히, 의료, 교육분야 등 기능형 메타버스 서비스 수요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능형 서비스에 대한 모범사례를 유형화
- (자율규제 관련 규정 정비) 자율규약, 시행세칙, 분과 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, 상위법령 개정, 규제환경 변화,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, 사업자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개정 추진

□ 사업자의 자율규제 참여 확대

- (사업자 참여 확대)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및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 모집 활동 추진

※ 목표 : 참여사업자, '24년 42개社 → '25년 70개社

- (가이드라인 배포)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위원회 및 유관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

□ 자율규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등

- (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)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자율점검표(체크리스트)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발굴·선정하고,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자율규제 활동 제고
- (성과공유회 개최) '25년 자율규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선정된 우수사례(사업자) 시상을 통해 자율규제 저변 확산 추진
- (홈페이지 콘텐츠 보강) 자율규제위원회(www.msrc.or.kr) 및 분쟁조정처리지원(dispute.msrc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규제 활동 관련 콘텐츠 및 산업동향 등 최신 정보를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제공

□ 메타버스 윤리 보급·확산 추진

- (보급·확산 방안 연구) 윤리원칙 및 실천윤리의 사회 전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 연구
- (교육사례 연구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) B2B, B2C 등 주체별(공급·창작·이용자) 교육사례 분석 및 교육 확산 방안 연구
 - 메타버스 주체별 우수 교육사례 발굴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,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
- (대외 확산 및 인식 제고) 교육 체험관 및 컨퍼런스 등 유관행사 참가 지원,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게재, 대언론 활동 지원 등

6. 협조사항

- 메타버스 자율규제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이 아니라, 산업계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약속이자 문화임
 - 이러한 자율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,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림

감 사 합 니 다.